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9. 11.(금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이승춘, 주무관 윤아람 • ☎ (044)201-3671, 3672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3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축산특화농공단지 지역특화산업으로 조성...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

-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,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라남도(함평군)가 신청한 '축산특화농공단지'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,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.
- 투자선도 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·지원하는 제도로써,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, 세제·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.
 -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.6억원을 지원하고, 각종 세제·부담금 감면,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
 - 국토교통부가 '15년부터 매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, 현재까지 17개 선정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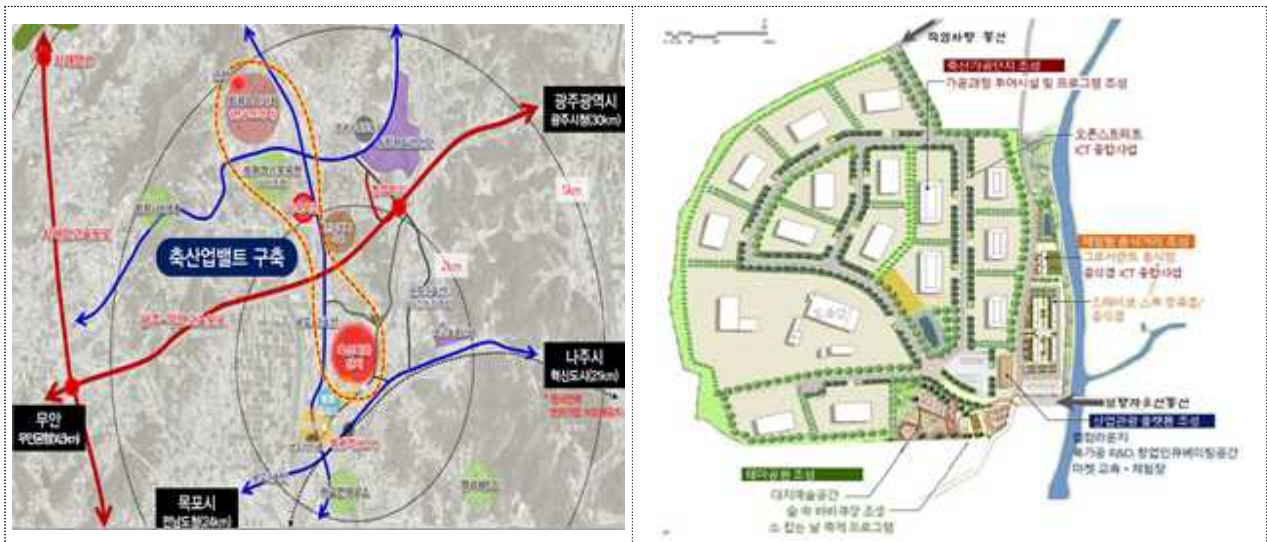
있으며, 이번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를 8번째로 지정*하게 되었다.

* (추진경과) 투자선도지구 선정('17.6) →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'20.2) → 전략 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('20.4) → 국토정책위 심의('20.8)

□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함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투자하여 318,564m² 부지에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


- 함평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지역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쳐져 있어,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왔으나,
- 이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지역특화자원인 함평한우의 고부가 가치를 함평 나비축제 등 테마관광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《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》



□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“함평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- 또한, “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윤재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승춘 사무관(☎ 044-201-3671, 윤아람 주무관(☎ 044-201-36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

□ **지정목적 및 필요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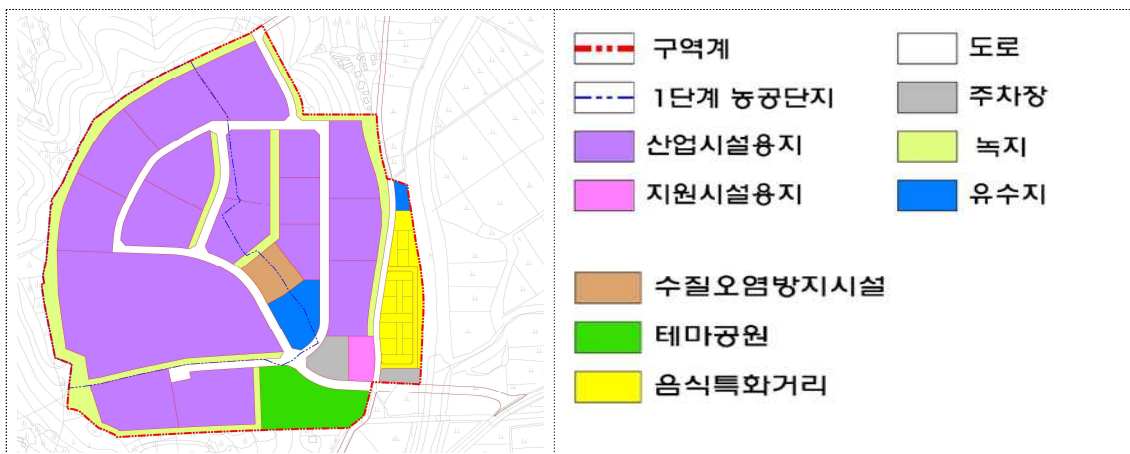
- 지역특화자원인 축산업을 이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필요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축산물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유도

* (주요시설) 산업시설(식료품 제조업), 특산물체험·판매관리, 6차산업지원센터 등

□ **주요 사업 내용**

- (사업 방식) 공영개발로 신속한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식료품 제조업 유치,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
- (사업비 구성) 총사업비 479.9억원(연계 하천사업 119억원 집행)
 - 사업비(479.9억원)는 국비(83.6억원*)와 지방비(396.3억원)로 구성
 - * 국토부 도로사업 지원(20억원), 테마공원 및 음식특화거리 지원(43.6억원), 6차산업지원센터 지원(20억원)
- (추진경과) 투자선도지구 선정("17.8) →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"20.2) →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("20.4) → 국토정책위심의("20.8)
- (토지 이용계획) 산업시설(200.4천㎡, 62.9%), 공공시설(100.5천㎡, 31.5%), 지원시설(3.1천㎡, 1.0%), 음식특화거리(14.5천㎡, 4.6%)

< 투자선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>



1. 목 적

-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,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
- 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15.1.1)과 함께 제도 도입

2. 적용대상 및 유형

- (적용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 사업*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
- 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개발사업 등
- (유 형)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

3. 주요 혜택

- 유형(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)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 특례, 재정지원*, 세제·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

구 분	발전촉진형(낙후지역)		거점육성형(낙후지역외)
	성장촉진지역	접경·도서지역	
유형별	*사업당 100억원	-	-
	세제·부담금 감면		-
공 통	규제 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종)		
	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지원 등		

※ '20년부터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에도 사업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(50억 한도)

<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>

